

##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5월 30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3조~제4조)
- 다.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 (안 제5조~제6조)
- 라. 문화유산 정보화 촉진 및 보호활동 지원 (안 제7조~제8조)
- 마. 문화유산교육진흥 정책 추진 (안 제9조)
- 바.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(안 제10조)
- 사. 문화유산돌봄사업 (안 제11조)
- 아. 협력체계, 재정지원 (안 제12조~제13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2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gratia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